



제 418국회 (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67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섬 지역 주민 운송수단으로 낚시어선 이용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이란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으로, 낚시어선의 출·입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낚시장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어선을 일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섬 지역 주민들은 낚시어선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섬 지역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섬 지역 주민 운송수단으로 낚시어선 이용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낚시어선을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4조의2(고립지역 주민 등이 필요한 경우의 낚시어선 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섬 지역에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하여 교통에 불편을 겪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해당 섬 지역 주민의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이용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섬 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는 464개(2021년 행정안전부 조사 기준)로, 이 중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항로가

없어 여객선·도선¹⁾ 등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섬은 73개(주민 수 1,025명)로 나타나고 있음.

[해상교통 사각지대 섬* 현황]

구 분	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섬 수(개)	73	2	6	6	41	18

*주: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정기선 운항이 없는 섬

*자료: 행정안전부(2021)

□ 이에 개정안은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운송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충하여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현재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어선은 2023년 기준 4,293척으로, 고립된 섬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전남과 경남에 각각 797척, 1,145척이 신고되어 있음.²⁾

□ 현재 교통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개인선박이나 비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행정선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섬지역이나 육지로 이동할 방법이 충분치 아니하여, 일상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응급 상황 시 응급의료센터 등으로의 이송이 어렵게 되는 등³⁾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1) 도선은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을 뜻함

2) 낚시어선업 신고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3) 현재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헬기나 해경정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의 긴급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당 교통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불법적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섬 접근성 제약 → 섬 인구감소 → 대중교통 기반 약화 → 섬 인구감소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개정안은 이와 같은 고립된 섬 지역 주민에게 낚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섬 지역의 낙후된 교통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섬의 인구감소 등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⁴⁾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⁵⁾, 그 밖에 내수면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는 행위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도선사업’⁶⁾의 업무에 속함.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낚시어선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낚시어선으로 하여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로 근거법령과 요건 및 규제가 다른 도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6.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의2(적용배제)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업에 관한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낚시어선과 유선·도선의 개념 및 요건 비교]

구분	낚시어선	유선·도선
관련 법령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정의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	○(유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 ○(도선) 내수면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시설 기준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안전,구명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기타 설비 등)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선박전기설비기준 등
선령 제한	○목선: 20년 이하 ○FRP선, 강선, 알루미늄선: 25년 이하 ○추가 연장기준 없음	○목선, FRP선: 15년 이하 ○강선: 20년 이하 ○관할관청이 인정 시 추가 연장 가능
톤수	(<u>신고</u>)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u>면허</u>) 총톤수 5톤 이상, 승객 13인 이상의 총톤수 5톤 미만, 영업구역 2해리 이상 ○(신고) 그 외
승무 정원	1명	2명 이상
교육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매년 <u>4시간</u>)	○유·도선 사업자 안전교육(매년 <u>8시간</u>) ○「선원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비상대비훈련
출항 제한	○기상 주의보 또는 경보 ○안개 등 시계 1킬로미터 이내 ○해상상황에 따라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시	관할 지자체 및 해경에서 별도 공고한 기준
영업 구역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	관할관청(지자체 또는 해경)에서 허가받은 구역
검사	낚시어선 안전성검사(매년)	○선박안전법에 따른 정기적검사*(매년) * 정기검사 + 중간검사 ○안전검사(매년, 선박안전법 적용받지 않는 경우)
안전 점검	매년 1회 이상(필요시 수시 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구분	낙시어선	유선·도선
승선 원 확인	출·입항 신고기관에 선원 및 승객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 낙시어선에 승선자 명부 사본 보관 - 필요시 선박 점검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선사에 제출 - 선사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보관 - 신원확인(해운법에 따른 여객선만 해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여객선은 '16.1.25 이후 시행
정원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해양수산부

□ 관련 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낙시어선을 도선으로 겸하게 하는 경우 기존 도선사업 및 여객선업 등 사업간 영업권 침해에 따른 혼란 및 반발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낙시어선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승객 안전을 위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등에 따른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운항 요건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규정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낙시어선업 신고 현황

○ 시·도별 낙시어선업 신고 현황('18~'23)

(단위: 척)

시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543	4,595	4,536	4,422	4,383	4,293
부산	182	175	171	174	168	161
인천	228	220	233	205	194	183
울산	38	46	44	43	39	35
경기	88	94	95	90	77	73
강원	337	319	246	267	252	272
충남	1,136	1,098	1,060	997	978	978
전북	269	270	262	267	290	252
전남	724	838	860	790	791	797
경북	116	119	129	125	137	132
경남	1,208	1,198	1,202	1,210	1,172	1,145
제주	217	218	234	254	285	265

○ 규모별 낙시어선업 신고 현황('23)

(단위: 척)

구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293	161	183	35	73	272	978	252	797	132	1145	265
1톤미만	8								7			1
1톤-2톤미만	230	18	2	5		28	11	5	95	2	62	2
2톤-3톤미만	393	19	18	2		33	44	7	132	9	126	3
3톤-4톤미만	850	46	27	18	11	99	185	10	93	22	271	68
4톤-5톤미만	639	34	30	4	8	46	108	17	75	23	246	48
5톤-6톤미만	136	6	3	2	1	19	30	1	15	6	36	17
6톤-7톤미만	257	9	9	2	6	15	91	13	16	8	64	24
7톤-8톤미만	399	2	9	1	6	12	205	32	24	11	63	34
8톤-9톤미만	109	3	2		4		43	11	11	5	27	3
9톤-10톤미만	172	24	83	1	37	20	261	156	329	46	250	65